

공제가입증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우: 028 - 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총장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내용이 약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원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계약서 사항을 변경하실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가 필요하오니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저희 안전원으로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구서(안전원 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연구주체의 장의 사고경위서 등

일반	공제가입기간	2023-09-01 00시 ~ 2024-08-31 24시		
	공제가입금액	유족급여 : 200 백만원 장해급여 : 200 백만원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장의비 : 10 백만원 입원급여 : 5 만원		
	가입인원 수	13,599 명	총 공제료	59,252,670 원

계약자	계약자명		고려대학교 총장		학교 (기관)명	고려대학교		
	연락 처	전화	02-3290-2763			설립구분	사립	
		팩스	02-927-9025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공제가입내역

대학	대학생	가정교육과	대학	대학생	간호학과
대학	대학생	데이터과학과	대학	대학생	디자인조형학부
대학	대학생	물리학과	대학	대학생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대학	대학생	바이오의공학부	대학	대학생	사이버국방학과
대학	대학생	생체의공학과	대학	대학생	수학과
대학	대학생	수학교육과	대학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대학	대학생	스마트보안학부	대학	대학생	컴퓨터학과
대학	대학생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대학	대학생	건축학과
대학	대학생	기계공학부	대학	대학생	반도체공학과
대학	대학생	방사선학과	대학	대학생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대학	대학생	산업경영공학부	대학	대학생	생명공학부
대학	대학생	생명과학부	대학	대학생	생명유전공학부
대학	대학생	식품공학과	대학	대학생	신소재공학부
대학	대학생	융합에너지공학과	대학	대학생	전기전자공학부
대학	대학생	전기전자전파공학부	대학	대학생	지구환경과학과
대학	대학생	차세대통신학과	대학	대학생	환경생태공학부
대학	대학생	화공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생	화학과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대학	대학원생	간호학과	대학	대학원생	국방기술경영학과
대학	대학원생	국제지역보건학과	대학	대학원생	금융보안정책전공
대학	대학원생	금융보안학과	대학	대학원생	기술경영학과
대학	대학원생	뇌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디지털금융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디지털융합금융학과	대학	대학원생	디지털포렌식학과
대학	대학원생	물리학과	대학	대학원생	바이오의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보건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보건안전융합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대학	대학원생	보건통계학과
대학	대학원생	빅데이터융합학과	대학	대학원생	사이버보안학과
대학	대학원생	산업디자인학과	대학	대학원생	소프트웨어보안학과
대학	대학원생	수학과	대학	대학원생	수학과 - Mathematical Data Scienc
대학	대학원생	심리학과	대학	대학원생	역학및보건정보학과
대학	대학원생	융합보안학과	대학	대학원생	인공지능융합학과
대학	대학원생	인공지능학과	대학	대학원생	정보보안학과
대학	대학원생	정보보호학과	대학	대학원생	지리학과
대학	대학원생	지식재산전략학과	대학	대학원생	컴퓨터학과
대학	대학원생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대학	대학원생	환경직업보건학과
대학	대학원생	NBIT융합전공	대학	대학원생	건축사회환경공학과의
대학	대학원생	건축사회환경공학전공	대학	대학원생	건축학과
대학	대학원생	기계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기후환경학과
대학	대학원생	디자인조형학과	대학	대학원생	마이크로/나노시스템협동과정
대학	대학원생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대학	대학원생	미래융합소재학과
대학	대학원생	미세소자공학협동과정	대학	대학원생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협동과정
대학	대학원생	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학과	대학	대학원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배터리-스마트팩토리학과	대학	대학원생	분자진단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산업경영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생명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생명분자유전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생활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스마트도시학과
대학	대학원생	스마트융합학과	대학	대학원생	스마트제조학과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대학	대학원생	식물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식품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신소재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대학	대학원생	원예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의생명융합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자동차융합학과
대학	대학원생	전기전자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지구환경과학과	대학	대학원생	환경생태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환경생태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화공생명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화학과	대학	연구원	AI융합학부
대학	연구원	IT공학	대학	연구원	간호학과
대학	연구원	경영학과	대학	연구원	뇌공학과
대학	연구원	물리교육과	대학	연구원	물리학과
대학	연구원	미디어학부	대학	연구원	소프트웨어학과
대학	연구원	심리학부	대학	연구원	인공지능학과
대학	연구원	정보창의교육연구소	대학	연구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
대학	연구원	컴퓨터학과	대학	연구원	휴먼지능정보공학
대학	연구원	공학연구원	대학	연구원	기계공학과
대학	연구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대학	연구원	생명공학과
대학	연구원	생명과학과	대학	연구원	융합전자공학
대학	연구원	전기전자공학	대학	연구원	지구환경과학과
대학	연구원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원	환경생태공학과
대학	연구원	응용화학과	대학	연구원	화공생명공학과
대학	연구원	화학 및 의화학과	대학	연구원	화학과
대학	연구원	화학신소재학과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인원·명단 통보 및 자동담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매학기)으로 가입인원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의 경우 인원 변동 시 명단을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통보지체로 학적(명단)에 없는 연구활동종사자 사고자 발생 시

1-2-1.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인원을 가입한 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본 공제에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단 학과별 부분인원(명단)으로 가입 시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 담보함.

1-2-2. 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1-3.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보장기간 확대

1-3-1. 졸업 후 학적에서 제외된 연구활동종사자가 동일학교 진학 예정자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안전원은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보장합니다.

1-3-2. 다만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1-3-3. 해당 대학원 진학예정자(일시적 학적상실자)에 대한 공제료 환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원은 더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2. 정산일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하며 정산일 기준 공제가입 대상자 현황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저희 안전원으로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질병분류 포함),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이 공제증권은 포괄증권으로서,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저희 안전원에 통지하시거나 직접 전산 접속 후 조정하셔야 하며, 그러한 사유로 본 공제증권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